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11. 26.(수) **브리핑 시작 시**

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

- 지방의회의원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‘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’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
-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원칙, 출장심사위에 시민단체 포함, 징계 처분자 출장 제한, 위법·부당 출장 감사기구 감사조사 의뢰, 담당직원 보호 등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」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.
-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▲1일 1기관 방문, ▲출장계획서 사전공개, ▲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·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,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- 특히,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.
- 이에,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먼저,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.

-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, 국제행사 참석,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.
- 아울러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·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,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.
- 또한,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,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.

□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.

- 먼저,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.
- 또한,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·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,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.
-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·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,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.

□ 이와 함께,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.

- 공무국외출장시 ▲특정 여행업체 알선, ▲출장 강요, ▲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·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.
- 또한,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각출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.

- 행정안전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, 위법·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,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”며,
- “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,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	책임자	과 장	이준식 (044-205-337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인경 (044-205-3373)

